

PL 대응 제품 안전 정책

2001. 6

산업자원부
기술표준원

1. 제조물 책임법(PL) 도입에 따른 대응

□ PL법 도입 배경

- 사회적, 경제적 여건의 변화
 - 대량 생산, 대량 공급의 산업 사회 도래
 - 과학기술의 발달, 생산 유통의 복잡화 등으로 소비자의 상품 정보 인지가 불충분
-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및 시민의식 발달
-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 균형 유지
 -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, 필리핀 등 27개국 도입 실시

□ PL법 주요 내용

- 개념

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

 - 현행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“ 가해자의 고의·과실(과실책임) ” ⇒ “ 제조물의 결함(무과실책임) ” 으로 전환하는 제도

구분	과실책임(불법행위책임)	결함책임(제조물책임)
대상	제조업자의 고의·과실	제조물의 결함
책임요건	제조업자의 고의·과실과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	제조물 결함과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

○ 결함의 종류

- 제조상의 결함

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·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

- 설계상의 결함

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

- 표시상의 결함

합리적인 설명, 지시, 경고,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

□ PL법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 개선 의 필요성

○ 가전제품, 공산품, 승강기 등 공업적인 제조물·가공물에 대한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제조업자, 판매업자와 이와 관련된 자에 대한 최소한 안전 규제를 강화

-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

- 안전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의 안전관리 업무 관리 감독

-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 (리콜, 파기, 수거 명령 등)

- 관련 제조·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준수의무 부과 등

○ 무과실 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 책임과 시장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품안전규제(제품인증제도)의 상호 보완 대책 방안

- 제조물 책임법 : 민사에 의한 분쟁해결 법규

- 제품안전규제법 : 불법·불량 제품에 대한 행정상 단속법규

□ 각국별 운영 현황

○ 미국

-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) : 장난감, 의류, 유모차등 생활용품
- 연방환경청(EPA) : 살충제 등 환경 물질
- 연방통신위원회(FCC) : 통신기기에 대한 전자파 장해

○ 유럽 (CE 마킹제도)

- EU 지침 : 전기제품, 압력용기, 완구, 개인용보호장구, 의료기기, 통신단말기기 등에 대한 모듈별 적용

○ 일본

- 전기용품안전법 : 가정용 전기제품
- 소비생활용품안전법 : 유아용침대, 등산용 로프, 헬멧, 롤러스케이트 등 생활용품
- 약사법 : 의약품

○ 한국

- 전기용품안전관리법 : 가정용 전기제품의 안전인증제도
- 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 : 유아용침대, 등산용 로프, 안전모, 롤러스케이트 등 생활용품
-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: 승강기의 검사제도

2. 안전인증체제의 국제화 추세

가. 안전인증 체제 변화

○ 안전인증 기관

- ISO/IEC가이드 65(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)

○ 안전기준

- IEC 국제 규격
- 국가규격
- 단체규격

예 : UL 안전기준

- 60%는 국제규격 및 국가규격 채용
- 40%는 자체 개발된 안전기준 적용

○ 시험, 교정

- KOLAS(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: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)
 - 공인시험기관 인정
 - 국가교정기관 인정(ISO/IEC 가이드 58(시험·검사기관 인정기구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일반요건) 및 ISO 17025(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))

○ 안전제품생산 System(공장검사)


- ISO 9000
- ISO 14000

나. 우리부의 안전인증 정책 추진방향

□ 안전관리제도 운영현황

○ 각 부처별 강제 또는 임의 인증제도를 운영

- 28개 기관의 30개 개별법에서 독립적인 인증제도운영
(첨부 : 우리나라의 강제 및 임의 인증제도)
 - 안전관리 시스템
 - 소비자의 안전·보건 및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 운영
 - 산업표준규격확산 및 품질향상, 신기술,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임의 인증제도운영
- < 예시 >

구 분	전기용품	공산품	승강기
공장검사	○	-	-
제품시험 (검사)	○	사전.사후 검사	완성,정기,수시 검사
안전마크	EK()	검자	검사필증
불법제품 행정처분	○ 개선, 수거, 파기 명령 ○ 교환, 수리, 환불 명령	○ 개선, 수거, 파기 명령	○ 운행금지

□ 문제점

- 인증 시스템 구조가 체계적이 못함
 - 정부 주도의 행정처리, 벌칙 및 이행에 대한 강제력 미흡, 소비자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총괄 전담기구의 부재
- 안전인증마크의 다양성과 독립적인 안전인증제도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뢰성 저하 및 인증비용증대
-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대상여부 혼란
- 선진국 제도 차이로 MRA의 추진 장애 및 무역상 불리
 - 안전인증대상품목이 선진국에 비해 적음
 -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
 - 안전기준의 분류방법, 적용범위,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이 국제규격과 상이

< 예시 : 전기드릴 >

구분	품목분류	적용범위	시험항목 및 방법
국내	기술기준 KSC 9615	기술기준:600V이하 1.5KW이하 휴대형인 것 KS규격:단상(110,220,110/220V),삼상(220,220/380V)	교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(60Hz)로 시험
국제	IEC 60745-2-1	단상 : AC/DC 250V이하 삼상 : AC 440V이하	교류·직류중 불리한 전압 및 정격주파수(50Hz 또는 60Hz)중 불리한 주파수로 시험 내습성, 내구성, 부품 시험항목 추가

- 인증제도 운영방법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로 오인
 - 미국, 유럽 등은 소비자 중심으로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, 국내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하에 정부 기관에서 안전인증제도를 운영(전기용품 안전인증은 민간기관 수행)

□ 추진방향

안전인증제도를 통합관리하는 가칭 “소비제품안전법”을 제정 추진 검토

- 단일 인증제 확립과 국제적 상호인정협정 체제 구축을 위한 안전인증제도 개선
- 유럽의 CE마킹 제도 등

○ 단일 안전인증마크 및 안전기준의 통일

- 개별 강제 또는 임의 인증제도에서 운영하는 인증마크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단일 인증마크 제정
- 안전기준을 국제기준(ISO, IEC)과 일치화 시켜 안전기준의 단일화
 - 전기용품안전기준 : 1,311 종 (2000- 2002)
 - 공산품 사전·사후검사기준 : 50 종 (사전:18, 사후:32)
- 승강기 검사기준을 EN 안전코드 등으로 선진화
 - 설치, 유지, 보수 검사기준에서 설계·제작기준까지 검사기준화 (2001-2003)

- 각 부처의 제품안전인증 관련법 의제처리 규정
 - 단일 인증마크로 타법령에 의한 인증, 승인, 검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
- 인증기구 지정기준의 국제화로 양자 또는 다자간 상호 인정협정(MRA)체결의 원활화
 - 국제기준 ISO/IEC 가이드 65 및 ISO 17025에 적합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
- 안전에 위해성이 높거나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대상품목의 확대 적용 검토 추진
 - 사전·사후검사 대상품목 : 유희(놀이)기구 등
 - 전기용품 : 직류(건전지)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등
 - 승강기 : 휠체어리프트 등
- 절연물 등록제도 시행
 - 내구년한까지 제품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절연물 안전기준 강화
 - 불프레셔 시험
 - 인쇄회로기관 수직연소 시험
 - CRT 시험
 - 내트래킹 시험 등
 - 상기 기준에 의거 적합하여 등록된 제품 사용시는 인증시 시험 면제

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

- 품질경영촉진법을 개정 (2000. 11월 정기국회 통과)
 - 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개칭(2001. 7. 1 시행예정)
 - 주요 개정 내용
 - 인증 및 연수기관 지정권한인 인정업무를 민간이양 (인증 및 연수 기관 지정 등)
 - 사전·사후검사로 구분된 것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단일화하고 그 이외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대상 품목은 안전검정기관에서 안전검정을 자율적으로 받음
 -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및 리콜제 도입
 - 품질표시제도 권고사항으로 제시행
- 안전검사제도의 변경

항 목	현 행	개 정(안)	비 고
법적근거	품질경영촉진법	품질경영촉진 및 공산품안전관리법	
검사기준	기술표준원 고시	기술표준원 고시	
검사방법	매로트별 안전검사	모델별 안전검사 정기검사(연2회 이상)	
수수료	공장도 가격 또는 CIF 가격의 1%이내	안전검사 및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	
합격증서	없음	안전검사 합격시 교부	2년 유효
합격필증	안전검사기관 관리	제조·수입업체 자율 부착	
합격취소	없음	정기검사 불합격 또는 기피	

3. 안전기준의 국제화

- WTO/TBT협정(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일반협정)에 의거 국제표준을 강제규격/임의규격의 기초로 사용
 - 표준이 기술장벽으로서의 국제교역의 80%(년간 4조 달러)에 영향을 미침
 - '99. OECD 규제개혁과 국제표준화 보고서 발표

- 안전인증제도를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

- 안전인증기준의 국제 IEC기준에 부합화 권고

-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적합성평가방법을 국제표준으로 단일 적용하여 상호인정협정을 가속화
 - ISO/IEC 가이드 65, ISO 17025, 9000 및 14000 등

- 다자간 또는 양자간 MRA 확대 추진
 - 국제기구(APEC, ASEM, OECD, WTO), 지역인정기구 협력체(APLAC-EA) 등
 - EU-호주, EU-미국, 한-EU, 한-일, 한-칠레, 한-폴란드, 한국-러시아 등

4. 안전인증기관의 책임

- 안전인증기관은 ISO/IEC가이드 65(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) 및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기관이 ISO 17025(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)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, 불만사항 및 분쟁에 대한 대책수립
 - 제조자 및 기타 당사자들이 인증기관에게 제기하는 이의제기, 불만사항 및 분쟁은 인증기관의 절차서 보유 및 기록 보관
 - 안전인증 처리절차의 미 준수
 - 불충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절차 및 문서화
 - 부적격자에 의한 공장심사
 - 교육훈련 부족 및 미흡한 환경조건
 - 불충분한 인적 또는 물적자원
 - 제품 시료채취방법의 부적절성
 -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험데이터에 의한 안전인증

- 안전인증기관은 어떠한 소스로부터 확인되었던지간에 모든 불만사항들과 이상상태들을 등록 조사 기록 관리
 - 안전인증기관은 아래의 측정을 포함하는 개선/시정조치의 개발을 위한 조사 실시
 - 모든 부적합사항의 영향을 최소화
 - 실시 가능한 빨리 인증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복구
 - 부적합 사항의 재발 방지
 - 채택한 개선/시정조치 방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

5. 제조물 책임법(PL)에 관련된 보험제도

○ 한국

- 중기협중앙회에서 PL공제보험제도 실시
- 9개 손해보험사에서도 중소기업 업종, 규모, 부담능력별 PL보험 상품 개발 추진중

○ 일본

-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PL보험제도 운영 ('95.2월)
- 하도급 거래상의 PL문제해결을 위해 47개 하청 기업협회에 고문 변호사를 두고 법률상담을 지원

○ 미국

- 보험회사가 제조물의 안전성 기준이나 규격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을 인수하고 PL 사고원인 규명 및 피해자 배상을 해결

○ 유럽

- 유럽내의 대부분 국가가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PL사고처리

6. 신뢰성 평가 시스템 도입

개념

- 해당 시스템이 규정된 기간동안
- 요구되는 기능을 완수할 수 있는 성질

신뢰성과 안전성과의 관계

○ 신뢰성

- 시스템의 임무수행을 위해 구조물의 파괴 또는 기능 발휘를 방해하는 손상의 방지를 하는 것
- 피해규모가 작고 발생가능성이 큰 것
-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건들의 예방

○ 안전성

- 인간의 사상 또는 재산 손실을 방지하거나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
- 피해규모가 크고 발생가능성이 작은 것
-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예외적인 사건을 관리대상으로 시스템 안전의 관리기준이나 활용기법이 더욱 엄격하고 광범위

시스템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안전성 도입 방법

- 시스템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생산, 운용,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수명 주기(life cycle)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실시